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274
- 발 의 자 : 박순규 의원 (찬성의원 24명)
- 발 의 일 : 2021년 4월 1일
- 회 부 일 : 2021년 4월 6일

2. 제안이유

- 지난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서울시 지방세 체납은 6조6,725억 원이고 매년 평균 1조3,345억원의 지방세가 징수되지 않고 있어 서울시 정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서울시의 최근 5년간 평균 체납 지방세 징수율은 17.2%로 대구광역시 41.2% 광주광역시 39.8%에 비교하여 저조한 실정임. 현재 체납세금 징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개인 월별 지급액 한도 100만원은 26년 전인 1995년 6월 책정된 금액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고,
- 더욱이 2021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40만원 이상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개정되어 소득세 납부로 실질 포상금은 약 25%가 감액되며, 체납 세금 징수 동기부여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도액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체납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2항제2호).
- 나. 1995년 조례 개정 시 한정된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 한도액 100만원을 물가상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240만원이상 포상금에 대한 과세, 체납징수 동기부여 효과 감소 등을 감안하여 125만원으로 조정함(안 제5조제1항제2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2021. 4. 9.~ 4. 16.)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년도수입(서울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분) 세입증대를 유인하고자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 이하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제도 중심으로 기술함('20년 세입징수포상금(1,815백만원) 중 지방세 1,708백만원(94.1%), 세외수입 107백만원(5.9%)).

가. 입법 배경 및 필요성 검토

- 「지방세기본법」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2013. 8. 13.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방세기본법」(현행)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 ⑦ (생략)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 먼저, 세입징수포상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지방세 체납액(연 징수결정액) 규모를 보면 최근 5년 평균 1조 1,731억원 수준이며, 이 중 평균 2,121억원 (20.1%)을 징수하고 있음.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이 분석〉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결산전)
징수결정액(A)	1,416,742	1,328,201	1,256,009	1,030,407	834,347
예산(징수목표)액(B)	225,248	233,297	236,597	221,567	222,078
예산편성률(B/A)	15.9	17.6	18.8	21.5	26.6
징수(결산)액(C)	237,356	209,405	202,843	226,319	184,629
예산/결산율(C/B)	105.4	89.8	85.7	101.9	83.1
체납/징수율(C/A)	16.8	15.8	16.1	22.0	22.1
결손액(D)	234,810	257,982	383,784	314,213	245,339
결손률(D/A)	16.6	19.4	30.6	30.5	29.4

※ 5년 평균 지방세 체납징수액 2,121억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상 서울시 세입 총액(41조 6,748억원)의 0.5%, 일반회계 세입(28조 9,755억원)의 0.7%, 지방세수입(20조 4,581억원) 1.0%를 차지하는 수준임.

- 재무국에서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공무원(자치구 포함)에게 월 100만원(개정·시행 1995. 6. 10.)을 지급한도로 하여, 연 20억원 상당의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개정·시행 1995. 6. 10.)

제3조의2(지급한도)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신설 1995. 06. 10)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연도별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0,047	2,256	2,058	1,976	2,049	1,708
시	2,150	397	412	399	487	455
자치구	7,897	1,859	1,646	1,577	1,562	1,253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징수포상금 월 지급한도 금액을 비교해 보면, 최저 33만원(충남, 세종시)에서 최고 500만원(경기도)으로 편차가 크고, 평균 월 137만원의 지급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타시도 체납 세입징수포상금 제도 비교 분석표〉

연번	시도별	지급기준	지급한도		비고
			지급률	금액(만원)	
1	서울시	과년도 체납액 1년~3년이상 입기제 건당3천, 월한도없음, 3~7% 지급	1~5%	건당 30 월 100	
2	부산시	과년도 체납액 1년~3년이상 입기제 규정 없음	1~5%	건당 30 월 100	일괄체납정리 포상금 포함
3	인천시	과년도 체납액 1년~3년이상 입기제 규정 없음	1~5%	건당 30 분기 300	
4	대구시	과년도 체납액 1년~3년이상 입기제 규정 없음	1~5%	건당 30 월 100	4급이상 제외
5	대전시	과년도 체납액 1년~3년이상 입기제 규정 없음	1~5%	건당 30 월 70	
6	광주시	과년도 체납액 1년~3년이상 입기제 규정 없음	1~5%	건당 30 월 100	4급이상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7	울산시	과년도 체납액 1년차분, 2년차분 이상 입기제 규정 없음	1%,5%	건당 30 월 100	
8	세종시	과년도 체납액 1년~3년이상 입기제 분기 300만원 지급한도	1~5%	건당 30 분기 100	3급이상 제외 일괄정리 포함
9	경기	과년도 체납액 1년~3년이상 입기제 건당100, 월500한도, 2~6% 지급	1~3%	건당 50 월 500	
10	강원	과년도 체납액은 무조건 2% 결손처분 체납액은 무조건 3%	2% 3%	건당 50 월 200	3급이상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11	충북	과년도 체납액 1년~3년이상 입기제 규정 없음	1~5%	건당 50 월 200	4급이상 제외
12	충남	과년도 체납액 1년~3년이상 입기제 규정 없음	1~5%	건당 30 분기 100	4급이상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13	전북	과년도 체납액 1년~3년이상	1~5%	건당 30 월 100	4급이상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연번	시도별	지급기준	지급한도		비고
			지급률	금액(만원)	
		임기제 규정 없음			
14	전 남	과년도 체납액 1년~3년이상, 1천만원 초과 징수건당 50한도, 임기제는 월 300 한도	1~5%	건당 30 월 100	4급이상 제외
15	경 북	과년도 체납액 1년~3년이상 임기제는 월 300한도	1~5%	건당 30 월 100	4급이상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16	경 남	과년도 체납액 1년~3년이상 임기제는 월 300한도	1~5%	건당 30 월 100	일괄체납정리 포상금 포함
17	제 주	과년도 체납액 1년~3년이상 임기제 건당3천, 월한도없이 5% 지급	1~5%	건당 30 분기 300	4급이상 제외

- 본 개정조례안은 26년간 동결되어 있는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한도액 인상을 통하여 체납 징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세입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나. 세부 내용 검토

1) 특별공직 인정 요건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제2항제2호)

- 안 제2조제2항제2호는 체납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규정과 관련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생략)	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2. 제1호----- -----

- 본 안은 제290회 정례회에서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추어 당시 일부 조문을 이동·삭제하는 등 본 조문을 재구성하여 개정한 의결주문이 본 조례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97, 2019.12.16. 의결)
 의결주문 중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1항제3호”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 의회에서 의결한 개정 의결주문이 서울시보(제3559, 2019.11.31., 별첨)에도 정상 게재되었음에도, 법무행정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또다시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는 점에서
- 법무 관련 부서의 주의 깊지 못한 행정행태의 시정과,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제무국은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안 제5조제1항제2호)

- 안 제5조제1항제2호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감소하는 포상금 상당액을 보전하고자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현행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	제5조(지급한도) ①	-----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	

<p>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p>1. (생략)</p> <p>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u>100만원</u></p> <p>② ~ ④ (생략)</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u>125만원</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보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와 관련하여 연간 24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 종전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2021년부터 발생하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한바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442호, 2021. 2. 17., 일부개정) -

종 전	현 행
<p>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p> <p>1. ~ 19. (생략)</p> <p><u><신설></u></p> <p>② (이하 생략)</p>	<p>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p> <p>-----.</p> <p>1. ~ 19. (현행과 같음)</p> <p><u>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u></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p>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
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
득분부터 적용한다.

- 이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대상(기타소득)이었던 세입징수포상금이 과세대상
으로 전환되어 실질 포상금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이를 현행 수준으로 보전
하려는 것으로,
- 본 안에서는 체납징수 공무원의 급여에 본 세입징수포상금(상한 15백만원)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8천 8백만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 해당 소득세 세율(24%, 지방소득세 포함시 26.4%)을 감안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한도액 인상률을 25%로 정한 것으로 보임.

※ 종합소득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 원 이하	6%	-
1천2백만 원 초과 ~ 4천6백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천6백만 원 초과 ~ 8천8백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천8백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 따라서, 26년간 100만원으로 책정되어온 현행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25만원으로 인상하여 매년 20%* 내외의 징수율에 머물고 있는 체납
지방세 징수 실적 제고를 유인하려는 취지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 최근 5년 평균 지방세 체납액 1조 1,731억원 대비 2,121억원(20.1%)을 징수
하고 있는 수준임.

- 분석 결과를 보면, 개정안에 따른 포상금 산출액(세전)이 현행 지급한도액 100만원을 초과하여야만 소득세의 일부라도 보전될 뿐, 이에 미달할 경우 소득세액만큼 실질 포상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한도 125만원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질 포상금이 현행 포상금 수준에 비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근로소득세 과세 전환에 따른 포상금 실수령액 변동 예시〉 (단위: 원)

산출포상금액	현행	개정안	
	포상금	포상금	세액(26.4%)
80만원	800,000	588,800	211,200
100만원	1,000,000	736,000	264,000
125만원	1,000,000	920,000	330,000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과세표준 규모 88백만원 이하 구간 적용

- 따라서, 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한도를 월 12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은, 소득세액을 보전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것이며,
 - 세금 보전을 위해 포상금을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만, 과세표준이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속하는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현행 공무원 평균 연봉('20년 6,468만원, 인사혁신처)과 포상금 지급한도(1,500만원)를 합한 금액이 8천만원(7,968만원) 수준임을 감안해 볼 때, 이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액은 약 4천만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바, 과세표준 4천 6백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한도액 인상 정도와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전공제액
1천2백만 원 이하	6%	-
1천2백만 원 초과 ~ 4천6백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천6백만 원 초과 ~ 8천8백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천8백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근로소득세 과세 전환에 따른 포상금 실수령액 변동 예시〉 (단위: 원)

산출포상금액	현행	개정안	
	포상금	포상금	세액(16.5%)
80만원	800,000	668,000	132,000
100만원	1,000,000	835,000	165,000
120만원	1,000,000	1,002,000	198,000
125만원	1,000,000	1,043,750	206,250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과세표준 규모 46백만원 이하 구간 적용(세율 : 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

- 포상금 산출액(세전)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 보전 및 현행(상한 100만원) 보다 실질 포상금의 인상효과가 나타나고,
- 산출액이 120만원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실질 포상금 감소하며 6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세액만큼 실질포상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사실상 과세표준 구간은 4천 6백만원 구간 적용되는 공무원이 대다수일 것으로 보이는바, 지급한도액을 25만원 인상하는 본 안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상 공무원(36명, 2020년도 기준)의 현행 월 평균 세입 징수포상금 수령액은 7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체납액 징수공무원 1인당 세입징수포상금 수령액〉 (단위: 원)

구분	2018	2019	2020
최고 수령액	10,448,530	11,198,380	12,000,000
최저 수령액	6,369,440	8,117,490	5,877,580
평균 수령액(연)	8,314,230	9,506,050	8,406,360
평균 수령액(월)	692,850	792,170	700,530

- 연중 월 지급한도액(1백만원)을 한 번 이상 달성한 공무원은 월 6.6명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간 세입징수포상금 한도액(1천 2백만원, 100만원 × 12개월) 달성 공무원은 단 1명에 그치고 있는바,

〈월별 포상금 지급 상한액(1백만원) 수령자 수〉 (단위: 명)

구 분	합계	2018	2019	2020
합 계	240	65	96	79
2월	43	13	15	15
4월	30	6	15	9
6월	58	15	25	18
8월	41	11	14	16
10월	39	14	13	12
12월	29	6	14	9

- 본 안에 따른 지급한도액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 포상금은 감소할 뿐 아니라, 포상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의 일부라도 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공무원 수는 미미한 수준(현행 기준 월 6.6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소득세액 보전으로 해당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여 세입 증대를 유인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본 안의 지급한도액 인상 이외에, 징수 건당 상한금액(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보다 실효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현행조례
제5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 ④ (생략)

3) 기타(부칙)

-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의 적용 대상 세입징수포상금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적용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한다.

다. 종합검토

-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세입징수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담 공무원이 고유업무로서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에 대하여 급여 외 별도로 포상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 ※ 국세청의 경우, 민간인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외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둘째, 지방세 세입의 99.0%를 징수하고 있는 다른 세무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 ※ 5년 평균 지방세 체납징수액 2,121억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 서울시 지방세수입 20조 4,581억원의 1.0%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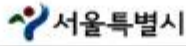
- 셋째, 본 개정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대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 넷째, 포상금 확대가 실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성과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그동안의 징수실적과 연계한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

참고 자료 1

- 서울시보 제3559호(2019.12.31.)

서울시보 제3559호



2019. 12. 31.(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15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394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추어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법에 중복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제2조제1항)

나. 결손시세 징수포상금은 총징수액에서 기본 징수경비 및 징수액을 공제한 징수금액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기본공제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를 폐지하되, 징수포상금 증가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율을 하향 조정하여 현 지급수준을 유지하고자 함(제4조)

다.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통해 승소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공적에 대하여 지급한도를 확대하고자 함(제5조제4항)

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법령개정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제6조 및 제9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6.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민간인
7.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1항제3호"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제2조제3항 및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제2조제4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제2조제1항제6호"를 "제2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포탈공제"를 "포탈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액체납액 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제2조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소송승소(다만,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포상금 또는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송사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에 따라 5백만원을 한도로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없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위원은 호선으로 정한다.

제6조제9항(종전의 제8항) 단서 중 “제2조제1항제3호”를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3조”를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조제1항제3호”를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일 이후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395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참고자료 2

- 본 개정안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442호, 2021. 2. 17.,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종 전	현 행
<신설>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9. (생략) 10.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11.·12. (생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u>상금과 부상</u>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 ----- ----- 1. ~ 9. (현행과 같음) 10.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1.·12. (현행과 같음) 13. ----- -----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을 제외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
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 19. (생략)

<신설>

② (이하 생략)

부칙

-----.

1. ~ 19. (현행과 같음)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급
과 부상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
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
득분부터 적용한다.

참고자료 3

- 지방세 관련 4개 법령별 위임 조례 현황 -

지방세 관계 법령		위임조례	
법명	목적사항	조례명	목적사항
지방세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